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이하 “지식재산포인트”라 한다)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특허청장이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하며, 1 지식재산포인트는 1원에 상응한다.
- ② “특허료”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특허출원을 위한 웹사이트를 말한다.
- ③ “소기업”, “중기업”은 각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을 말하며,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 ④ “특허고객번호”는 「특허법」 제28조의2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3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①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

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 지식재산포인트로 본다. 이하 같다)

2.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특허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디자인등록원부에 등록한 경우 : 이전받은 자가 해당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최초 납부한 경우 매 건당 특허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 및 디자인 각 5만 지식재산포인트

②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발명자·고안자 또는 창작자가 출원인·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개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이하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라 한다)의 납부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하고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고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고 4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4.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고 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5.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의 납부 총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③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대리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 자동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자

동납부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2.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6항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자동납부한 횟수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에서 정하는 횟수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2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특허료를 통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모바일 연차등록안내서비스(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안내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면서 우편안내문 발송을 취소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모바일연차등록안내서비스를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4.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은 사람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고객번호의 정보 중에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경우 : 1만 지식재산포인트(다만,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휴대전화번호를 변경 또는 경정 신청하는 최초 1회에 한해 부여한다)
5.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모든 지식재산포인트(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선정된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한정한다)
  - 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

허청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납부한 4년분부터 9년분까지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6. 「특허법 시행규칙」 제17조(「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 또는 「상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무효처분의 취소청구, 절차의 추후보완, 출원심사의 청구 또는 재심사의 청구를 하려는 자가 2021년 3월 14일까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경과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 특허청장에게 납부한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4호, 제3조제1항제12호,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5조제1항제11호의 기간경과 구제 신청료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④ 삭제

⑤ 삭제

**제3조의2(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 제8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 전년도 특허 등의 창출활동 관련 수수료·등록료의 납부 총액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에 따른 감면 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른 차감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6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을 제외한다.

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한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지식재산포인트 상당 금액을 합산한다.

다.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8항에 따라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여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반환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면제분 또는 감면분을 공제한다.

2. 제3조제2항에 따른 출원인이 공유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기준으로 출원인의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특허청장이 제3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직권으로 부여한다.

③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사유가 발생한 때에 각각 부여한다.

2.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른다.

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에는 최초로 선정된 해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 매년 1회씩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에게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해부터 2회차까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고 3회차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전에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충

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허청장에게 납부한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디자인등록출원료, 특허심사청구료, 실용신안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및 디자인등록료 납부 총액의 계산 방법은 제3조의2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3. 제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기간 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의 특허고객번호를 기준으로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한다. 다만, 기간경과 구제를 신청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균등배분하여 부여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4조(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관해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이전한다는 의사가 별표 1에서 지정하는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을 것
2.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고,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와 「국세기본법」 제2조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



니할 것

3.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실시기간은 3년 이상이고,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대상 연도분에 해당하는 모든 권리존속 기간이 실시권의 실시기간에 포함될 것
5.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리이전사항이 등록원부에 등록될 것

② 삭제

**제5조(지식재산포인트 신청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 중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부여대상 연도분의 특허료·등록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은 이전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특허료 또는 등록료가 납부된 이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이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 이유를 붙여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식재산포인트 사용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여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는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여한 해의 4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 납부시 보유한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하여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수수료의 경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송달료 및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포인트 환수)**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여한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권리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실시권자가 계약기간 내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단 실시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위반한 경우
5. 거짓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받은 경우
6.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
7. 잘못 부여된 지식재산포인트
  - ② 특허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식재산포인트를 환수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환수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지식재산포인트가 부족한 경우 추후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사유 발생시 부족분만큼 차감하여 적립할 수 있다.

### **제8조(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특례)** ① 특허청장은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에 따라 2020년 3월 15일 대통령령 제300호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선포일에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원인 모두가 해당하여야 하고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

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해당하여야 한다)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할 때에 해당 호에서 정하는 지식재산포인트를 2021년 3월 14일까지 부여 할 수 있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국제출원을 제외한다)을 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출원료, 실용신안등록출원료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2. 「특허법」, 「실용신안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심사청구료 또는 실용신안심사청구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에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최초 3년분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4.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라 1년분(같은 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초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를 납부하는 경우 :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인등록료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5. 「특허법」 제193조(「실용신안법」 제4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소기업 또는 중기업이 특

허청장에게 국제출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면서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 조사료(「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어 조사의 조사료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지식재산포인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 권리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때 또는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실용신안등록료·디자인등록료 납부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원시의 출원서(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수수료납부서를 말한다), 심사청구시의 심사청구서, 권리설정등록시와 4년차분부터의 특허료 또는 등록료 납부시의 특허(등록)료납부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포인트는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제5항에 따라 사후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때에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은 자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를 적용하고, 같은 규칙 제8조제6항 및 제8항부터 제10항에 따라 가산된 금액과 같은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정한 가산료, 추가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를 수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11항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2에 따라 조사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10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디자인보호법」 제87조에 따라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는 2021년 3월 14일까지 출원서, 심사청구서, 특허(등록)료납부서, 수수료납부서가 제출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6. 제8조제1항제4호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021년 3월 14일까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8조제8항 본문에 따른 납부기간이 개시되는 건을 기준으로 한

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자가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이유 등으로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허료·등록료 또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5년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었던 때에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출원(국제출원을 포함한다) 또는 심사청구를 하였거나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공유였던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공유자의 수에 따라 균등 배분하여 부여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를 잘못 부여한 경우나 환수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2제4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특허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재난지역 출원인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

정은 특별재난지역(「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0조에 따라 2020년 3월 15일 대통령공고 제300호로 선포된 지역을 말한다) 선포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무상 개방되는 특허정보 등을 등록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한국지식재산 거래정보시스템(<http://www.ipmarket.or.kr/>)
2.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지정된 창조 경제혁신센터(<http://ccei.creativekorea.or.kr/>)

[별표 2]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여하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준

<자동납부 횟수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기준>

자동납부 횟수	3회	5회	10회
지식재산포인트	1만	2만	3만

##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

[권 리]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등록번호]

[부여원인]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부여대상 특허료·등록료 납부 연차] 제    년차)

무상 이전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의사가 공지된 웹사이트]

창조경제혁신센터(<http://ccei.creativekorea.or.kr>)

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http://www.ipmarket.or.kr>)

※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시 납부한 특허료·등록료의 최대 50% 상당액을 지식재산포인트로 부여하며, 무상  
이전시 건당 특허는 30만 지식재산포인트, 실용신안·디자인은 5만 지식재산포인트를 부여합니다.

※ 부여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부여요건 위반이 확인된 경우 부여된 지  
식재산포인트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환수 대상 행위

무상 실시권 설정 후 계약기간(최소 3년) 내 권리자가 설정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실시권자  
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무상 실시권 설정 후 계약기간(최소 3년) 내 실시권자가 설정계약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실시  
사업과 동시에 이전한 경우 제외)

무상이전 후 3년 이내 원권리자에게 재이전되는 경우

지식재산포인트 신청 당시 또는 부여 이후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특수관계인 또는 수급사업자(실시권자만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잘못 부여된 경우

※ 신청서에 기재된 연차가 납부된 특허료·등록료 연차와 다를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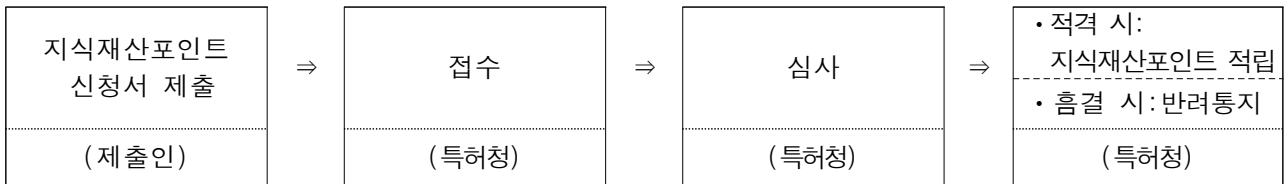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실시권자 또는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이라는 증명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또는 디자인권자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에 대하여 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무상으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또는 무상으로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이전한 경우 그 허락한 자, 설정한 자 또는 이전한 자에게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국제출원료를 제외)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포인트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인]란

[성명(명칭)]란에는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출원인코드]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출원인코드를 적습니다. 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인 코드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코드]란에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를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코드] (특허법인의 대리인코드)

3.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란

이 난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의 대상이 되는 권리, 등록번호, 부여원인행위 및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의사가 공지된 웹사이트를 기재하며, 여러 건을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본 난을 반복하여 작성합니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각각의 건마다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권리] 란은 지식재산포인트로 신청할 권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나. [등록번호] 란에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다음 기재 예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야 합니다.

[등록번호 기재 예]

해당 번호	기재 예
[등록번호]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일련번호(2자리) - 일련번호(2자리)	10-1234567-00-00

다. [부여원인] 란에는 지식재산포인트 부여의 원인행위가 되는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만일 무상 통상(전용)실시권 설정인 경우 지식재산포인트를 받고자 하는 특허료·등록료 납부 연차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때 특허

료·등록료는 기 납부되어야 함은 물론 등록원부에 등록된 실시기간이 해당 연차의 권리존속기간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이 공지된 웹사이트] 란에는 무상 실시권 설정 또는 무상이전이 공지된 웹사이트를 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안에 표시(예: ☒)합니다.

#### 4.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시권자 및 이전받은 자가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이라는 증명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권리이전등록신청

【접수번호】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5.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 합니다.

##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서

(앞쪽)

[신청인]

[성명(명칭)]

[특허고객번호]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번호])

[제8조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

-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 제8조제1항제3호내지 제4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

[출원(국제출원, 등록)번호]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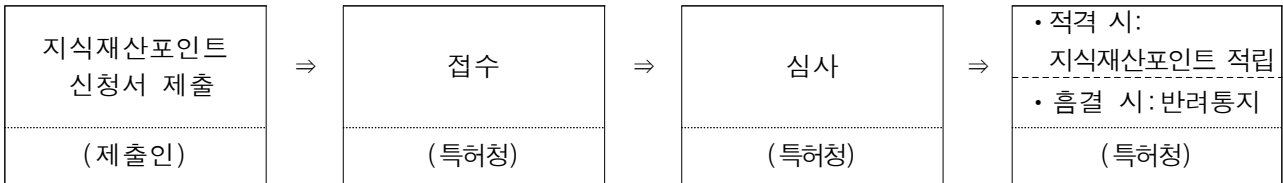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 규정

이 서식은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 등이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합니다.(관련 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의2,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2. 처리절차



※ 기재요령

1. [신청인]란

[성명(명칭)]란에는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시 적은 국문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특허고객번호]란에는 특허청에서 부여한 특허고객번호를 적습니다. 특허고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대리인])란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번호]란에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를 적습니다.

[예] [대리인]

[성명(명칭)] 특허법인 ○○○○

[대리인번호] (특허법인의 대리인번호)

3. [제8조에 다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신청]란

이 난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하기 위한 해당 요건 중 하나를 선택하여 □ 안에 표시(예: ⊗)합니다.

4.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란

이 난은 지식재산포인트 부여를 신청하기 위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관한 출원(국제출원), 특허(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5. [첨부서류]란

가. 이 서식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지식재산포인트 부여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나. 서류의 원용

- 1) 동시에 둘 이상의 신청에 의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건에는 다음 예와 같이 원용에 관한 사항을 적어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동일자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질권설정등록신청서

【특허(등록)번호】 10-1234567-00-00

- 2)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증명서가 이미 제출된 다른 서류에 첨부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증명서를 원용한다는 취지를 적고 해당 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위임장 1통 [이하에 적은 제출서류에 첨부된 것을 원용]

【서류명】 권리이전등록신청

【접수번호】 2-1-02-1234567-12

다.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캐닝)하여 제출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1) 첨부서류로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 (300dpi 권장)까지의 흑백 TIFF(Tagged Image File Format)로 합니다.
- 2)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레이스케일 또는 칼라 이미지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되는 전자적 이미지 형식은 해상도 300부터 400dpi(300dpi 권장)까지의 JPEG(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로 합니다.

라. 첨부서류를 PDF(Portable Document Format)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작성 시 유의사항

서식은 제출인(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기명을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시의 인감은 출원인 등록(대리인이 변리사인 경우에는 변리사 등록, 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시 사용한 것과 같은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며,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에 따라 서명 또는 인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서명 또는 인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